유의사항

- 1. 건설기술정력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,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정우에는 이름 적시하여야 합니다.
- 2. 간설기술경력증의 갱신 사유(기재란의 부족 등) 또는 재발급사유(훼손 문설 등)가 발생한 경우에는 「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공제4항의
-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갱신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 3. 건설기술경력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게 되면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, 동법 제6조의4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4. 건설기술자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가 해당되는 기간동안 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(개발급)

백 급 변 후 : G00503025 (00137584)

用:

박재홍 주민등목번호: 650307-1951619

현 후 소 계주 계주시 노형동

2526-10번지 202호 [건설기술관리법]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정력증을 교무합니다.



2008 06 26

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

140mm×180mm (単巻事刊(1巻) OCR 105g/m²)

(제3폭)

▶ 기수드급

분 야	刀套装计	아 인
보목	독급	於500000 東西部分 東西部分
축당및지항공간정보	21-14 21-14	THE PERSON
		是學者是
	200	로둑 특급

종목 및 등급	합 격 일	등 부 빈 호	
		The state of the s	
		t .	
		원본과	71

30307-0811339 97. 7. 18 \$19